노무법인 로율

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, 1802호 (공덕동, 르네상스타워)

Tel 010) 2890-7948, 02)713-2022 Fax 0303) 3444-2025

smilejhjh@hanmail.net

2026. 11. 9.

■ 제 목 :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

■ 내용

’26. 11. 3.부터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 ‘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’의 대상과 점검 사항, 사업장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
■ 감독 개요

• 감독 기간 : ’26. 11. 3.부터 (종료일 미공개)

• 감독 대상 : 전국 100개소

-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: 정보통신업, 전문 · 과학 · 기술서비스업, 숙박 · 음식점업, 도소매업 등

- 특별연장근로 반복 활용 사업장 : 노동 · 산업안전 합동점검

- 서울 성동구(성수동 일대) 소재 사업장 집중 점검

• 추진 배경 : ’26. 10. 13.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근로자 수당 미지급 · 상시적 초과근무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건강보호 관리 문제 지적

• 처리 방침 : 법 위반 시 시정지시, 과태료,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

■ 주요 점검 사항

구 분	점 검 내 용	관 련 조 문
근로시간 한도	1주 40시간,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준수 여부	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, 제53조
가산수당	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 지급 여부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% 이상	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
특별연장근로	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 준수 여부	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
건강보호 조치	특별연장근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 (휴식시간 부여 등)	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22호

■ 유의사항 :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 조치

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더라도 『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』(고용노동부고시 제 2025-22호)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.

1. 다음 중 하나 이상 실시

- 특별연장근로 시간 1주 8시간 이내 운영
-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
- 특별연장근로 기간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 휴식 부여

1주 '미만'인 경우)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 연속휴식

1주 '이상'인 경우) 1주 단위로 1일(24시간) 이상의 연속휴식

2.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, 특별연장근로 기간 시작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

3. 건강검진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, 근로시간 단축,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

■ 참고 : 직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

’26. 2. 23. 발표된 교대제 · 특별연장근로 반복 활용 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, 전 사업장에서 위반(243건)이 적발됨.

위 반 유 형	사업장 수 (비율)
연장근로 한도 위반	24개소 (53.3%)
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	29개소 (64.4%) 약 22억 3천만원
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	5개소 (11.1%)
보건 ·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	24개소 (53.3%)

이후 ’26. 7. 1. 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 · 교대제 활용 사업장 100개소 감독이 실시되었으며, 이번 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업종까지 대상을 넓힌 것임.

■ 시사점

• 근로시간 관리 현황 점검 : 출퇴근 기록 등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준수 여부 확인

• 가산수당 정산 점검 : 포괄임금 · 고정연장수당 운영 시 실제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

• 특별연장근로 운영 사업장 : 인가 시간 준수, 건강보호 조치 이행 및 건강검진 서면 통보 기록 확인

•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(「근로기준법」 제110조)

■ 참 조

고용노동부('26. 11. 3.), 「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·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」